

#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--

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 양민규 의원  
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 개정안은 시장 등 공무원이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장 내 소란 등의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질서유지권을 강

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동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,  
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